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가합50236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6. 10. 7 선고 2016나200677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가합502362 판결

전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可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 2015. 11. 20.

판결 선고 2015. 12. 23.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3,106,595원 및 그 중 1,050,124,615원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5. 5. 2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4. 1.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47,934,980원의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3,106,595원및 그 중1,050,124,615원에 대하여는 2014.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신용보증서의 발급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따라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 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에 기하여 1,1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피고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증일자	보증번호	대출은행	보증원금	보증기한	비고
2007. 9. 7.	F	중소기업은행	85,000,000원 (이후 76,500,000 원으로 변경됨)	2008. 9. 5. (2014. 8. 29.로 연장됨)	이 사건 제1 신용보증
2010. 11. 4.	G	중소기업은행	994,500,000원	2011. 11. 3. (2014. 10. 31.로 연장됨)	이 사건 제2 신용보증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나. 원고의 대위 변제

1) 피고 회사는 2014. 1. 6.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원금연체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4. 3. 14.

중소기업은행에 1,060,668,028원(= 이 사건 제1 대출 원금 61,200,000원 + 이 사건 제1 대출 이자 905,719원 + 이 사건 제2 대출 원금 986,701,703원 + 이 사건 제2 대출 이자 11,860,606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10,543,413원을 회수하여 이를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의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여서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은 합계1,050,124,615원이다.

2) 위 회수금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 1일간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3,466원(= 10,543,413원 × 1/365 × 12%,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이하를 생략한다)이고, 원고가 지출한 법적 절차 비용 등은 2,978,514원이다.

다.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1) 피고 B은 2010. 6.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7. 7.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1. 3. 피고 C과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4. 1. 6.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서울서부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2015. 10.14. 피고 C에게 47,934,98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위 배당금은 공탁되고 피고 C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3,106,595원(대위변제금 잔액 1,050,124,615원+ 확정지연손해금 3,466원 + 법적절차비용 2,978,514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1,050,124,615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4.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15. 5. 2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참조),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95다14503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다3861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014. 1. 3. 체결되었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2014. 3. 14. 발생하였으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2007. 9. 7. 및 2010. 11. 4.에 이미 성립해 있었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에게 2014. 1. 6. 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4. 1. 3. 이 사건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H은 이 사건 답변서에서 피고 B의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피고 회사 및 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2013년 말경부터 피고 B의 이자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금 회수를 독촉하였고, 피고 H의 강한 요구에 따라 이 사건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자산상태가 좋지 못하여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해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4. 3. 14.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피고 B의 무자력

갑 제7, 10, 11호증, 을다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 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과, 김포시 I 임야 25,091㎡ 중 2/13지분이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2014. 5. 28.경 감정가는 771,000,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가액은 385,500,000원이고, 위 I 임야 중 피고 B 소유 지분의 공시지가는 2015.1. 기준으로 258,630,307원(67,000원 × 25,091㎡ × 2/13)인바,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구상금채무액만으로도 위 적극재산의 가액을 충분히 초과하므로 피고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2006. 6. 15. 선고 2006다12046 판결,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 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참조).

을다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07. 9. 27. 피고 B에게 300,000,000원을대여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앞서 본 같이 피고 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인 피고 C에게 근저당권설정을 해주는 것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 회사및 피고 B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고 C에 대한 변제가 어려웠고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이 임박했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피고 C이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을 47,934,980원의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 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지영난, 판사 김두희, 판사 정혜승